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68호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제명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, 중소기업청장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창업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, 상권정보정보시스템 구축□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3086호, 2015.1.28. 공포, 2015.5.2 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□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령의 제명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으로 변경함
- 나. 시 도지사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□운영을 위해 지역별 인□ 허가 사업장 정보 등의 자료□정보를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업무□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□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중소기업청장이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 우,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(안 제9조)
- 바. 중소기업청장은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사. 법률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 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

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아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' 또는 소상공인연합회'와 유사한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 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[판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소상공인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청보공개-행정 입법예고"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[)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- 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

(전화: 042-481-4576, Fax: 042-472-6958)

대통령령 제 호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'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'을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''으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」(이하"를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"로, "업 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"을 "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"으로, "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"를 "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조"를 "제8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'소기업 또는 소상공인"을 '소상공인"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소상공인의 날)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9월 첫째 화요일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)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 - 1. 지역별 인가 · 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
 - 2. 지역별 인구,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정보
 - 3.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,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정보
 - 4.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
 - 5. 지역별 사업체 정보
 - 6.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
- 7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제6조의 제목 (운영세칙 등)"을 (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"으로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공단"이라 한다)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(이하 천통시장등"이라 한다)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치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한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
 - 2. 지역상권의 조사 · 분석
 - 3.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
 - 4.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
 -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

- 6. 그 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(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)"을 (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에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기금의 보조금 지급)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9조(기금의 환수)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2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
 - 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

제10조의 제목 (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)"을 (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"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"로,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"를 "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"로, '사무를 진흥공단"을 업무를 공단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운용·관리"를 "관리·운용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'운용·관리"를 "관리·운용"으로, '사무"를 업무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'진흥공단"을 각각 '몽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'진흥공단"을 '공단"으로, '사무"를 업무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"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위원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시장등"을 전통시장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,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⑩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(고유식별번호의 처리) 중소기업청장(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.
 - 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 - 5.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 - 6.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
- 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 - 2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 - 3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 원을 사업계획의 집행
 - 4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 - 5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
- 6.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
-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의 집행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수 있다.

제14조(과태료)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1과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
특별조치법 시행령	법률 시행령
제1조(목적) 이 영은 <u>「소기업 및</u>	제1조(목적) <u>「소상공인</u>
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	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	
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	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	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
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	<u>한 법률」(이하</u>
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	"업종별
에서 <u>"업종별 상시</u> 근로자 수	<u>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</u>
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	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
에 해당하는 자"란 주된 사업	각 호의 구분에 따른
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	순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	②
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	
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「중	
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	<u>제8조</u>
및 <u>제5조</u> 를 준용한다.	
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	③ 소상공인

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조(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 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지원의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 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

•

 제3조(소기업
 지원계획의
 수립
 제3조(소상공인의 날) 법 제4조제

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
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은 매

 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
 년 9월 첫째 화요일로 한다.

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
제3조의2(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) ① 법 제4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"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 업장의 면적"은 「건축법」 제 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건축 물 전체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 당한다) 또는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 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, 제조시설로 사

<삭 제>

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 영면적,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

2.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 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"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명서"란 「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

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말한다. 제3조의3(농지보전부담금 등의

제3조의3(농지보전부담금 능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 은 신축·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「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」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 장면적률로 나는 면적으로 한 다. <삭 제>

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령」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 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. 다만,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 우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 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 시 종업워 수에 따른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제4조(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에 금융지원위원회(이하 "위워회"라 하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 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기획재정부 차관보
- 2.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장

제출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 별자치시장 • 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해 마다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 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 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3. 금융위원회 상임위원
- 4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 회장
- 5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
- 6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
- 7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
- 8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 장
- 9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
- 10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 촉하는 사람 5명
- 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 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이내
 - <u>가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</u> 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

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.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 나 기관의 장

- 다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
- 라.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 관이나 단체의 장
- 마.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헊이 풍부한 사람
-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제5조(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.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

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를 말한다.

관한 정보

-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며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다.

제6조(운영세칙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2. 지역별 인구,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정보
 - 3.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,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정보
- 4.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
 - 5. 지역별 사업체 정보
 - 6.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 한 정보
 - 7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법
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권정보
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
 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
 자료 또는 정보

제6조(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·운영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 하 "공단"이라 한다)이사장 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「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(이 하 "전통시장등"이라 한다) 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- 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 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 를 설치 · 운영한다.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.
 - 1.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 - 2. 지역상권의 조사 · 분석
 - 3.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
 - 4.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·교 육 및 상담
 -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
 - 6. 그 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 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 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 제7조(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 • 종) 법 제8조에서 "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"이란 「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8조(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법 제10조의4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이하 "진흥공단"이라 한다) 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| 제2조제1호 · 제 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.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(이 하 "시장등" 이라 한다)의 활 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 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 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 • 운영한다.

감독)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 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·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.

제8조(기금의 보조금 지급) 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 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.
- 1.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을 위한 정보제공 • 교육 및 상담
- 2. 지역상권의 조사·분석
- 3.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
- 4.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 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상담
-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 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 련 정보의 수집
- 6.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 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 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다.

제9조(기금의 보조금 지급) 법 제 제9조(기금의 환수) 법 제21조제3 10조의9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

항에서 "기금을 지출 목적 외

관리에 관한 법률 | 에서 정하는 | 바에 따른다.

제10조(기금의 운용・관리에 관 제10조(기금의 관리・운용에 관 한 사무의 위탁 등) ① 중소기 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 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 다.

1. (생략)

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」 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한 경우
- 2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기 금을 사용한 경우
- 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통 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 나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을 명 한 경우

한 업무의 위탁 등) ① ---------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-----"기금"이라 한다)의 운용· ---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 ------- 업무를 공단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- 2.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회계사무
- 3. (생략)
- 4. 그 밖에 기금의 <u>운용·관리</u> 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사무
-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 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,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 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~ 5. (생략)
- ④ 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 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 다.
- 제11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 제11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조

2 <u>관리·운용</u>
3. (현행과 같음)
4 <u>관리·운용</u>
업무
·
③ 공단
<u> </u>
1 『 /ᅯ케키 카 ()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<u>공단</u>
<u>업무</u>
에11조(기극우욧의워히이 조진.

운영)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운영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| 른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기

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

-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 소기업청 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 촉하거나 임명한다.
- 1. (생략)
- 2. 소상공인과 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
- 3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 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위 원회"는 "기금운용위원회" 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금운용위원회"라 한다)
②
1. (현행과 같음)
2 <u>전통시장등</u>
3. (현행과 같음)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④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 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, 기 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.
 -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.
 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①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고유식별번호의 처리) 중 소기업청장(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

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관한 사무
- 2.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 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 한 사업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
 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
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
 한 사무
- 5.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관한 사무
- 6.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
- 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 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

<신 설>

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- 2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집행
- 3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사업계획의 집 행
- 4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조직 화 및 협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- 5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 행
- 6.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 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 상공인에 대한 상담
-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 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

	을 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의
	집행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
	법률」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
	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
	있다.
<신 설>	제14조(과태료) 법 제30조제1항
	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	기준은 별표 1과 같다.